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기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060

발의연월일: 2025. 3. 18.

발 의 자:이기헌・이재관・허 영

강준현 • 허성무 • 김문수

권향엽 • 박지원 • 박해철

이재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러나 다양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특성상,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정비 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법의 목적에 재외동포사회가 한반도평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함을 추가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한반도평화와 관련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1조).

법률 제 호

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외동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중 "세계평화"를 "한반도 및 세계평화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재외동포정	제1조(목적)
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	
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	
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	
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	
인류의 공동번영과 <u>세계평화</u> 의	<u>한반도 및</u>
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	세계평화
다.	